

- ① 자치구청장이 산정(시가표준액의 결정은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)한 가액으로 하거나,
 ② 지방세연구원(한국감정원에서 변경)에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가액으로 함

참 고	재정비촉진구역이 재개발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----	--

1차적으로 '토지이용계획확인서', 2차적으로 '관련 고시문' 등을 통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인지 등을 확인함



○ (5년이내 상속주택)

-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
-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
- 다만,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“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”과 “최연장자”순으로 판단함

○ (공공매입임대주택 등)

-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목적 주택 : 대형건설사 혹은 공사
-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(령28조2_2호)

○ (노인복지주택 등) 노인복지주택, 가정어린이집을 운영목적 주택

-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(령28조2_3호)
- 내부공사 중일때는 주택수에 포함됨(추가운영요령)

○ (환매조건부 취득주택) 주택도시기금, LH, 자산관리공사 등이 설립한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
- 매도자(그 세대)가 해당 주택만 소유, 매도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
-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 권리부여